

# 유가보조금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

부정이익의 환수 |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| 명단공표



국민권익위원회

# 공공재정환수법

## 핵심내용

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,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,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.

부정이익의 환수

+

최대 5배의  
제재부가금 부과

+

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 
명단공표

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국민권익위원회,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,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신고자 보호

비밀보장  
신분보장  
신변보호  
책임감면

+

### 신고자 보상·포상

보상금 최대  
**30억원**  
포상금 최대  
**2억원**



01

##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?



### 공공재정지급금이란?

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합니다

**유가보조금은 대표적인 공공재정지급금입니다!**



### 유가보조금이란?

**유가보조금**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과 여객자동차(버스, 택시)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방보조금(운수업계보조금)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(유류세보조금)을 말하며 대표적인 **공공재정지급금**입니다.

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3조제2항~제3항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제5항~제7항, 「해운법」 제41조제2항)

#### 유류세연동보조금

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액 및 2016년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

#### 연료보조금

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충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

02

## 어떠한 경우가 부정청구에 해당하나요?

###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청구의 유형 [법 제2조제6호] (부정수급)



#### 허위청구 [가목]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
#### 과다청구 [나목]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
#### 목적외사용 [다목]

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

#### 오지급 [라목]

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제재부가금 부과·명단공표 대상

# 03

## 유가보조금 주요 부정청구 사례는?

### 사례1

택시에 연료구매카드를 주유를 한 후 영업을 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 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

공공재정환수법 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

**최대 5배** 부과



### 사례2

버스회사와 주유소가 공모하여 주유내역을 허위로 조작해 연료구매카드를 결제 한 후, 버스회사가 결제금액의 90%를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

공공재정환수법 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

**최대 5배** 부과



### 사례3

화물자동차주와 주유소가 공모하여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 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이 주유한 비용 및 세차·차량용품 비용 등을 해당 유류구매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

공공재정환수법 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

**최대 5배** 부과



## 누구든지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
## 04 어떻게 신고하나요?

소중한 나랏돈  
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



신고상담

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



신고방법

청렴포털\_부패공익신고  
[www.clean.go.kr](http://www.clean.go.kr)

인터넷

청렴포털\_부패공익신고 ([www.clean.go.kr](http://www.clean.go.kr))

방문·우편

국민권익위원회  
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2동  
정부합동민원센터  
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

FAX

044-200-7972

## 05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?

**비밀보장** 철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.

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.

**신분보장**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금지됩니다.

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,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·행정적·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.

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,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와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*신변보호**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, 그 친족 등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**책임감면**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, 신고 등과 관련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06

## 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

### 보상금 지급 신청

신고자의  
부정청구등  
신고

부정청구등 신고 접수기관

- ① 국민권익위원회
- ②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
- ③ 그 감독기관
- ④ 감사원 또는
- ⑤ 수사기관

신고자에게  
국민권익위의  
**보상금  
신청방법  
안내**

신고자  
보상금  
지급신청



### 신청요건

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 
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 
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

**부정청구등 신고  
보상금 최대  
30억 원**

신고자 보상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
(044-200-7742~7748)



06

## 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

### 포상금 지급 추천

신고자의  
부정청구등  
신고

부정청구등  
신고 접수기관

**지급 대상자  
추천**

국민권익위에  
신고자 포상금  
지급대상자  
추천 가능



### 추천요건

공공기관에  
현저한 재산상  
이익을 얻게 하거나  
손실을 방지한 경우  
또는  
공익을 증진한 경우

**부정청구등 신고  
포상금 최대  
2억 원**

신고자 보상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
(044-200-7742~7748)





유가보조금

## 공공재정환수법 바로알기